

범죄학 연구에서의 ‘질적 자료’의 활용과 전망

박 형 민*

국문요약

범죄학은 범죄현상이나 일탈행동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려는 경험과학이기에 범죄학 연구에서 어떠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용하느냐는 중요한 쟁점중 하나이다. 지금까지의 주요 동향은 양적인 자료를 주로 분석하여 이론을 검증하거나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찾아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질적인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자료는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양적인 자료만을 사용 했을 때의 한계를 지적하고, 질적인 자료가 적극적으로 활용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질적 면접의 수행을 위한 연구자들을 자기계발’, ‘수사 및 재판기록의 적극적 활용’, ‘새로운 자료 수집 방법 모색’, ‘다양한 질적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연구환경 개선’, ‘질적자료의 활용을 위한 윤리기준의 마련’ 등 질적 자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I. 서론

범죄학(criminology)은 범죄현상이나 일탈행동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려는 경험과학이다. 즉 범죄학 역시 자료에 입각하여 사회현상을 이해 또는 설명하려는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따라서 범죄학 연구에서 어떠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용하느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학에서 동원되는 자료를 크게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양적 자료는 숫자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수량적인 자료를 말하며, 질적 자료는 숫자가 아닌 다른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비수량적 내용자료를 의미한다. 현재의 추세는 양적인 자료가 상대적으로 선호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0년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연구 중 문헌연구로만 이루어진 연구들을 제외하고 실증적인 자료를 수집하였던 조사가 수행되었던 연구들을 살펴보면, 공식통계를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한 경우가 102건, 일반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사용한 경우가 53건, 교도소수용자나 보호관찰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사용한 경우가 38건, 그리고 심층면접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가 42건 등으로 나타났다.¹⁾ 그 밖에 수사 및 재판기록에 대한 내용분석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와 판결문에 대한 내용분석의 방법이 사용된 경우가 각각 10건씩 있었다. 또한 범죄학 관련 연구가 주로 수행되는 “형사정책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법연구”(한국형사법학회), “교정학연구”(한국교정학회), “피해자학연구”(한국피해자학회), “한국경찰학회보”(한국경찰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한국공안행정학회), “치안논총”(치안연구소), “경찰학연구”(경찰대학), “경찰대학논문집”(경찰대학), “한국경찰연구”(경찰발전연구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경호학회보”(한국경호학회) 등의 학술잡지를 살펴보아도 양적인 자료를 주로 분석하여 이론을 검증하거나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찾아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질적

1)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중 대부분이 심층면접을 주된 자료 수집 방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양적 자료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사전 조사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격적인 의미에서 질적 자료를 활용했다고는 보기 힘들 것이다.

인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자료는 거의 발견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처럼 많은 연구자들이 질적인 자료에 비하여 양적인 자료를 선호하는 이유는 양적인 자료가 '이론의 검증'이나 '범죄현상의 실태분석'이라는 연구자들의 현실적 필요에 부합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질적자료의 개방적이고 예측불가능한 속성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Padgett, 2001). 표본의 추출과 분석의 과정에 있어서 엄밀한 규칙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서 이러한 규칙과 절차를 따르기만 한다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양적인 방법에 비하여, 질적인 방법은 자료의 수집에 있어서 표준화된 절차가 아직 마련되어있지 못하며 자료의 분석 역시도 엄밀한 규칙보다는 연구자의 직관과 경험에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은 질적인 자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범죄학 연구자들은 질적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감수해야만 하는 위험을 무릅쓰기 보다는 양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양적인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양화(量化)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양화(量化)라 함은 구체적인 사회현실을 숫자의 형식으로 요약하는 작업으로 양화의 과정은 기본적으로 추상의 과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 현상이 추상화 되면서 그 과정에서 구체성이 상실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손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구체성의 상실을 대가로 우리는 복잡한 사회현실을 단순화시켜 전체적 윤곽이나 추세를 파악할 수 있게 되며, 이해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다양한 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적인 자료가 우리에게 많은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의 실상은 단순히 숫자로 요약되어 표현할 수 없는 다양성과 풍부함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필자는 범죄학 관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양화된 자료만을 사용하였을 때 무언가 부족함과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즉 우리에게 중요한 사회 현상인 범죄 현상을 그려냄에 있어서 그것의 다양성과 역동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왔다는 자기 반성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연구는 지금까지 질적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되어온 연구들의 성과를 정리하고, 숫자로 요약되어 표현될 수 없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드러내는 질적 방법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질적인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연구성과들을 '한국형사

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질적인 자료가 범죄학 연구를 풍부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범죄학연구에 있어서의 양적자료의 활용 동향

먼저 지금까지 범죄학 연구에서 빈번하게 이용되는 양적인 자료들을 개관함으로써 이들 자료의 특징과 장단점을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가장 중요하고도 유용한 양적인 자료의 하나인 공식통계들로부터, 공식통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는 설문조사 및 기록조사의 활용 동향과 이들의 한계를 살펴볼 것이다.

1. 공식통계

가장 자주 중요하게 이용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범죄에 대한 공식통계이다. 이중에서도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는 것은 대검찰청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범죄분석>이 있으며, 그 밖에 법무연수원에서 발간하는 <범죄백서>, 경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 등이 있다. 그리고 연구 주제에 따라서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마약류범죄백서>, 청소년위원회에서 발간하는 <청소년백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서 발행하는 <출입국관리통계 연보>, 법원 행정처가 발행한 <사법연감>, 법무부 보호국에서 발간하는 <보호관찰통계연보> 등이 빈번하게 인용되고 있으며, 각 기관에서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들도 사안에 따라서는 중요한 인용의 준거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연구주제가 특정화 되어 있는 경우 각 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식통계자료의 원자료(raw data)나 주제에 맞게 재분류된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렇게 범죄 현상을 드러내기 위하여 공식통계가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용하기 용이하다는 점에 있다. 각종 공식통계들은 국가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수집되고 정리된 자료들로서, 이미 일차적으로 정리된 상태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공식통계자료는 이미 출판물의 형태로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자료는 인터넷으로도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수집 과정이 없이도 유용한 자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일차적으로 가장 이용이 편리한 공식통계자료를 통해 범죄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다른 자료와의 접근이 곤란한 경우 공식통계가 유일한 자료원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식통계가 빈번하게 이용되는 두 번째 이유는 공식통계에서 포괄하는 사례의 수가 다른 어떤 자료보다 많다는 데에 있다. 예를 들어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의 경우 암수 범죄와 같이 드러나지 않은 범죄와 같은 몇몇 예외들을 제외하고 검찰에서 포착되어 조사된 모든 범죄가 망라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박형민, 2004). 그러므로 거의 전수에 가까운 사례라는 점은 공식통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미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식통계는 일단 조사가 시작되고 나면 거의 매년 통계자료가 집계되어 발표되고 있는데다가, 그 집계의 틀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통시적인 비교연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일단 한번 조사된 틀은 거의 변하지 않고 같은 항목이 반복되어 집계되고 있다.

이처럼 공식적으로는 전수에 가까운 사례가 제시되면서, 통시적으로는 비교연구가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범죄 현상에 대한 일반화를 시도하는 연구자나 일반이론을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는 공식통계만한 자료를 만나기가 드물 것이다.

그러나 공식통계자료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가장 커다란 공식통계자료의 한계는 이것이 연구의 목적으로 집계된 통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공식통계자료는 통계를 작성한 기관의 필요에 맞게 조직된 것으로서 개별 연구자들의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연구자가 중요시 여기는 주요 변수가 공식통계에서는 제외되어 있거나 불완전한 경우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자료중 하나인 <범죄분석>(대검찰청)의 경우 모든 범죄 현상에 적용하고자 만들어진 틀을 가지고 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보니 개별 범죄에는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성별', '연령', '학력' 등과 같이 일반적인 사항을 나타내는 항목을 제외하고 '기타' 또는 '미상'의 부분이 과도하게

많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2002년의 살인범죄의 범죄 원인별 분포를 살펴보면 ‘기타’가 30.2%를 나타내고 있으며, ‘미상’이 10.0%를 나타내고 있어, ‘기타’와 ‘미상’의 부분을 합하면 40%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형식적으로는 결측값이 아니지만 실제 분석에 있어서는 결측값과 유사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많은 사례수에도 불구하고 결측값의 비율이 높은 자료는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매년 같은 틀로 통계자료가 수집되고 있다는 장점은 한편으로는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한데, 너무 오래된 분류체계는 새로이 등장하는 범죄의 유형이나 수법 등을 포착해 내기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오래된 분류체계는 ‘기타’나 ‘미상’의 비율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또한 공식통계에서는 형사사법기관에 포착되지 않은 범죄현상(이른바 암수범죄)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즉 범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거나, 피해 자체가 은폐되어 공식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은 경우는 공식통계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공식통계의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범죄피해조사나 설문조사와 같이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과 수사 및 재판기록이나 판결문, 신분장 등과 같은 공식 기록을 직접 열람하는 방법이 있다.

2. 설문조사와 피해조사

먼저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범죄피해조사나 설문조사의 방법(이하 설문조사)의 경우, 공식통계에서 주요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연구자들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변수들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연구자의 이론적 틀에 맞게 질문을 조직하는 경우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변수들을 효과적으로 추출해 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피해조사의 경우 공식통계에서는 제외될 수밖에 없었던 암수범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심영희·조정희, 1990). 그러므로 설문조사의 방법은 기존의 이론을 검증하거나 연구자의 관심에 부합하는 범죄의 현상을 드러내는 데에 용이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점은 다른 측면에서 설문조사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는데, 구조화된 설문지의 경우 전적으로 연구자의 이론적 틀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드러내거나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물론 개방형 질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기는 하지만, 대규모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 개방형 질문의 유용성은 극히 제한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구조화된 설문지는 복잡한 사고가 필요한 질문을 만들기 힘든데다가, 설사 그와 같은 질문을 만들어 낸다 하더라도 그 문항에 대한 이해가능성, 응답률 등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질문 문항은 짧고 명료한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설문조사 역시 현상을 단순화 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 하는 것이 단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구체적인 현상의 풍부함은 놓치고 있다는 것은 받아들여야 할 비용인 것이다.

한편 설문조사 자체의 문제뿐 아니라 설문조사의 대상이 되는 피조사자의 성격이 범죄학 연구에서 설문조사의 한계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많은 범죄학연구에서 설문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보호관찰관의 감독 하에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임은 주제의 성격상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연구자들은 실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음성을 직접 듣기 위해, 그리고 그 범죄자 자신의 음성을 통해 범죄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위하여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응답의 진실성에 대하여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범죄 사실에 대한 회고적 질문에 응답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다소 희화화된 표현으로 자신들의 '영업비밀'을 폭로하라는 요구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실한 응답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응답의 진실성을 해치는 조건 중 하나가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혹은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설문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 혹은 반자발적으로 설문에 응답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교도관이나 보호관찰관의 권유나 압력으로 인해 설문조사에 임하거나, 딱히 할 것 없기 때문에 시간을 때우는 방편으로서의 설문조사에 임하는 등의

설문조사 상황은 응답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진실성에 대한 의구심은 수용자들 스스로의 과시욕구와 자존감 때문에 특정 변수에 대한 응답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보고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어 현실화 되고 있다.

또한 상습 범죄자거나 장기수용자들의 경우 간혹 한글 해독능력이 떨어지거나 장기간 집중하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설문 응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어려움들 때문에 설문지의 분량이 조금만 많아져도 응답의 신뢰성은 크게 손상된다. 특히 ‘공격성’, ‘자아존중감’, ‘준법성’ 등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질문의 경우 결측값이 많아져서 척도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 필자가 수행했던 2003년의 “살인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II)”의 경우 부록의 설문문항에 따르면 다양한 척도질문들이 기획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과도하게 많은 결측값들로 인하여 실제 분석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못하여 단순한 실태를 나타내는 문항만이 분석에 활용되었던 사례가 있다.

3. 기록조사

‘기록조사’라 함은 범죄가 발생하여 경찰 등의 형사사법기관에 인지되어 수사가 시작된 이후 범죄자가 체포되어 처분이 완료되기까지 기록되는 공식적인 문서에 대한 내용분석을 의미한다.

먼저 <수사 및 재판기록>에 대하여 살펴보면, 범죄 발생 즉시 ‘경찰단계’에서 기록되는 수사기록,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조서, 범죄자 체포 후 기록되는 피의자 심문조서, 전과 및 경력 조회자료, 실무 경찰의 의견서 등이 포함되며, ‘검찰단계’에서의 피의자 심문조서, 각종 증거서류, ‘재판단계’에서의 공판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이다. 그리고 <수사 및 재판기록>은 각 사건을 담당했던 지방 검찰청별로 기록이 보관되고 있다.

그리고 <신분장>을 비롯하여 교도소에서 기록된 문서는 각 범죄자의 간략한 범죄사실 요지와 교도소 수용 이후의 행적과 관련한 동태보고, 입소시 시행되는 개인 심리검사 내용, 각종 상벌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 밖에 경찰의 사건보고, 내부보고자료, 사건인지보고서 등이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기록

들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기록조사, 즉 공식 기록들을 연구자들이 직접 열람하는 방식의 조사는 공식통계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들이 이들 기록을 직접 열람하여 자료를 획득하는 경우 공식통계 작성자가 간과하여 중요시 하지 않은 변수들을 추출할 수 있으며, 개별 사건에 맞는 분석틀을 가지고 사건의 구체적인 부분을 기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연구자들이 범죄자들과 범죄피해자들을 직접 면접조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간접적으로나마 범죄자들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을 각각의 입장에서 청취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진술들에는 사건의 전후 맥락이 드러나는 진술들과 사건 당시의 정황, 심리적 상태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졌던 구체적인 상호작용이나 맥락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기록에 대한 내용분석은 원자료(raw data)를 제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각각의 변수간의 교차분석이나 회귀분석 등 공식통계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다양하고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 주제가 '살인' 등과 같은 하나의 죄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성폭력' 등과 같이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공식기록에 대한 내용분석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공식기록은 범죄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 기소 혹은 불기소의 자료로 사용되거나, 재판의 증거로 사용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이지, 연구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록에 의존하는 내용분석은 '주어진 자료'라는 한계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Padgett, 2001). 즉 공식 통계 작성자가 주목하지 않은 기록의 이면이나 기록의 행간에서 연구자에게 의미있는 변수들을 추출해 낼 수는 있지만 여전히 그 기록은 연구목적으로는 불완전할 수 있으며 부족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들 공식기록에 대한 내용분석에 관하여 또 한 가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이 기록들이 기본적으로는 질적 자료의 성격이 강하지만, 현재까지의 연구는 표준화된 조사표를 이용하여 양화시켜 사용해 온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필자를 포함한 많은 연구자들은 기록조사를 수행할 때

에 일정한 양식에 따라 분류(또는 코딩)하는 추상화 과정을 거쳐 자료를 양화시켜 사용해 왔다. 물론 기록조자의 코딩은 설문조사의 질문문항을 확정하는 것과 비교해서 새로운 변수들을 얼마든지 추가시킬 수 있다는 융통성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이 같은 양화의 과정은 방법론적으로 여전히 공식통계자료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각각의 구체적인 사건들은 숫자로 환원되고 단순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같은 단순화와 요약이 어찌면 그 자체로 연구의 목적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사례의 풍부함을 대가로 지불하고 얻어진 결과이다.

그리고 기록조사를 수행할 때 일반적으로는 연구자 스스로가 모든 기록을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연구자와 연구보조원들이 함께 코딩 작업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때 기록조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 또는 연구보조원들에 따라 동일한 현상이 다르게 코딩되거나 상이한 현상이 동일하게 코딩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물론 기록조사를 수행하기 앞서 대개의 경우 공동연구자들의 사전 회의와 연구보조원들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기는 하지만, 기록조사의 대상이 되는 공식 기록들이 조사자의 해석과정을 거쳐야 하는 항목이 포함되기 마련이어서 이 같은 오류의 가능성은 항상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Ⅲ. 질적자료에 대한 개관

앞서 양적인 자료, 즉 구체적인 현실을 양화시켜 활용하는 자료들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양적인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질적인 자료의 적극적 활용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후 다루게 될 질적 자료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한 기초로서 질적 자료의 성격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물론 질적방법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 연구의 주제를 벗어나는 것이나, 질적 자료의 일반적인 성격을 개관하는 것은 범죄학 연구에서 질적인 자료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보여 준다는 측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양적인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질적 자료에의 관심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양적인 자료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시적 접근은 원인과 결과를 양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을 주로 채택함으로써 이미 연구된 이론을 긍정하거나 부정하는데 유용한 방법지만, 새로운 발견적 연구가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Padgett, 2001).

그러므로 질적 연구는 많은 양의 자료를 표준화된 통계에 의해서 처리하는 객관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숫자를 이용하여 표준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양적 연구보다 좀 더 개방적으로 현상과 과정을 조사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연구로서(Wilson, 1973, Padgett, 2001, 재인용:19),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미시영역 연구를 통하여 항상 변화하는 새로운 현상에 관한 발견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해 주는 연구 방법이다.

양적연구는 자료가 수집되는 과정에서 통계적인 평가에 의한 고도의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질문에 대한 답은 연구자가 많은 질문에 거의 주어져 있으므로 새로운 연구가 어려워지는 폐쇄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질적 연구는 단순하게 계량화 할 수 없는 연구주제인 범죄현상의 구체적인 양상을 드러내는 데에 유용한 방법이며 기존에 관찰되지 않았던 유형을 발견해 낼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Babie, 2007).

이러한 의미에서 질적 연구는 특정 범주나 변수보다는 심도있는 묘사를 통해 연구대상이 복잡한 세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알리는 것이며(Padgett, 2001), 정확하게 정의된 검증할 가설을 가지고 자신의 연구과업에 접근하기보다는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의미를 만들어가는 작업(Babie, 2007)인 것이다.

그러므로 질적 자료는 만들어 내는 방법이 양적 자료에 비하여 융통적이고, 단위 행동의 근접의미를 해석하기 보다는 자료가 창출되는 근원적인 행위 맥락이 더욱 중요해 진다. 그리고 자료를 이용하는 설명방법에 있어서도 복잡성, 세부사항,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풍부하고 상황적이며, 세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완숙한 이해를 창출하는데 목적을 둔다(Mason, 2004).

<표 2> 질적연구와 양적연구의 비교

비교의 관점	질적연구	양적연구
연구의 포커스	자연현상이나 본질을 중심으로 연구	얼마만큼, 얼마나, 자주 등을 양적으로 연구
철학적 근원	현상학, 상징적 상호작용론	실증주의, 논리적 경험론
연상되는 시각	현장작업, 문화기술지, 자연적, 근거이론, 구성주의	실험적, 경험적, 통계적
탐색의 목적	이해, 묘사, 발견, 의미, 가설생성	예상, 조절, 묘사, 순응, 가설검증
연구디자인의 특성	유동적, 평가, 출현을 중시	운명적, 구조적
샘플	작다, 임의적, 목적적, 이론적	크다, 무작위, 표본적
자료수집	연구자는 기초적인 도구, 인터뷰, 관찰, 다큐먼트 이용	비율, 테스트, 서베이, 질문법, 컴퓨터 도구 사용
분석의 모드	귀납적, 나선적	통계적, 연역적
발견	대화적, 총체적, 팽창적, 심층적	정확한 숫자

* 출처 : Merriam: Qualitative Research, 박성희(2004:75)에서 재인용

패짓(Padgett, 2001)의 경우 질적 방법이 잘 선택되지 않는 이유를 질적 방법의 개방적이고 예측불가능한 속성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반드시 질적 연구가 필요한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 ① 잘 알려지지 않는 주제에 대한 탐구적 접근을 하고자 하는 경우
- ② 민감하고 정서적으로 깊이 있는 주제를 연구하는 경우
- ③ 실제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으로부터 ‘살아있는 경험’에 대한 이해를 얻음과 동시에 그들의 삶으로부터 어떤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는 경우
- ④ 프로그램과 개입이라는 블랙박스의 내면을 이해하고자 하는 경우
- ⑤ 양적연구를 하는 연구자로서 자료수집에서나 연구를 통해 발견한 내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 난관에 부딪힌 경우
- ⑥ 연구와 적극적 행동을 하나로 묶고자 하는 경우

패짓의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경험과학인 범죄학 분야에도 질적인 자료를 활용한 접근들이 필요한 영역들이 분명 존재한다고 할 수 있

을 것이며, 이하에서는 범죄학 연구 활동에서 질적인 자료가 활용된 사례들을 통해 질적 자료를 사용한 방법의 성과들을 평가해 보도록 할 것이다.

IV. 범죄학 연구에서 질적 자료의 활용

양적 자료를 이용한 방법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에서도 꾸준히 질적 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 질적 자료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몇 가지 유형을 구분해 보면, 질적 자료가 '양적 자료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된 경우, 양적 분석이 가능한 만큼의 충분한 사례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 질적인 자료로 양적인 자료를 대체한 경우, 양적자료에 대한 분석을 주된 연구방법으로 사용하면서 질적 자료로 양적 자료를 보완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질적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경우, 범죄학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적 자료를 발굴하여 분석에 동원한 경우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유형구분을 기초로 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행되었던 연구들 중 질적 자료가 활용된 몇몇 사례들을 살펴보고, 범죄학 연구에서의 질적인 자료의 활용 현황을 개괄하여 보고자 한다. 물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학 연구가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학 연구를 포괄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가장 적극적으로 범죄학 연구가 이루어지는 기관이며, 특히 파견 공무원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들이 수집되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여 볼 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는 "사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질적 자료를 양적자료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 경우

질적 자료가 가장 손쉽게 이용되는 방법은 양적인 방법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질적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최영신·박형민·김승만(2006)의 "교정공무원의 직무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 방안", 김지선·이동원(2006)의 "범죄피해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 조병인(2003)

의 “마약조직의 생존형태 연구”, 최인섭·최영신·박순진(1999)의 “여성수용자의 처우실태 및 개선방향 연구” 등과 같이 질적인 자료를 수집하기는 하였지만 분석에 동원하기 보다는 조사표나 설문조사지를 구성하기 위한 사전조사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질적 자료는 구체적인 서술의 자료로 동원되기 보다는 연구자들이 연구 대상의 배경적 지식을 확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문을 듣고 이 중 일부가 보고서에 반영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연구에서의 질적자료는 연구대상이 되는 시설이나 제도에 관한 실무자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면접조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질적 자료가 사용된 연구들을 몇 가지 더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임성식·이경렬(2006), 선거사범의 처벌과 당선무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김지선(2005), 법원의 부모교육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임성식·박영실(2005), 선거사범 처리실태와 개선방안
 김혁래(2005), 국가권력과 NGO와의 사회적 갈등해소 방안
 김성언(2004), 사회내 처우 연결망 구축 및 자원 동원화 방안
 조병인·원혜옥·민수홍·이경재(2004), 수용자 외부교통 확대방안 연구
 이성철(2002), 소년원 가퇴원자 보호관찰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동진 (2002), 소년법상 자원보호자제도에 관한 연구
 김지선(2002), 4호처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김성언(2002), 한국의 민간경비: 성장과 함의
 이천현·연성진·이민식(2001), 규제개혁정책과 부정부패:건설·건축, 환경분야
 조병인(1999), 범죄신고보상제도연구 외

2. 양적 분석이 가능할 만큼의 충분한 사례를 확보할 수 없을 때 질적자료를 사용한 경우

질적 자료를 활용하는 또 다른 유형은 임재표(1999)의 “교도소내 수용자 폭력행위에 관한 연구”, 전영실(2002)의 “여자비행청소년의 교정처우 실태에 관한 연구”, 김지영·김시업(2006)의 “목격자 증언의 정확성 제고방안” 등과 같이 연구 대상이 되는 사례들을 양적인 분석(즉, 통계분석)을 할 만큼 확보하기 힘든 경우 사용하는 것이다.

이중 김지영·김시업(2006)의 “목격자 증언의 정확성 제고방안”의 경우 실험의 방법과 면접의 방법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실험은 목격자들이 피의자의 얼굴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회상할 수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 시내 대학에 재학 중이며 심리학과 관련된 교양과목을 수강중인 299명의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식별절차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면접은 수사경력이 있는 경찰관 2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 결과를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질적인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양적분석의 틀로 질적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질적 자료를 활용할 때 반구조화 된 질문을 제시하고 그 질문에 각각의 경찰관들이 어떻게 답하였는지를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서술은 표본의 크기가 작은 설문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인 것이다.

임재표(1999)의 “교도소내 수용자 폭력행위에 관한 연구”의 경우도 심층면접을 통해 사례를 발굴해 내었으나, 질적 자료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사례를 나열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그 밖에 홍영오·이수정(2006)의 “범죄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방안 및 지원체계 연구”와 같이 조사자료의 수집은 심층면접의 방법을 사용하여 질적 자료로 수집하였으나, 분석 틀 자체는 양적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연구도 있었다. 홍영오·이수정(2006)은 전국의 범죄피해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지 발송하여 51부를 회수하여 분석하는 것을 조사의 한 축으로 하고, 범죄피해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의 실무자와 이들의 부모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여 51명의 부모와 24명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한축으로 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처럼 충분한 표본의 크기를 확보하지 못하여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 질적 방법을 사용한 연구들은 질적인 자료를 충분히 활용했다기보다는 사례를 단순히 소개하고 거칠게 분류하는 데에서 멈추고 있는 연구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3. 양적자료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질적자료를 활용한 경우

박형민(2003)의 “살인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II)”, 강은영(2001)의

“노인수형자의 특성 및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최영신(2003)의 “청소년 약물남용의 행태변화 연구” 등과 같이 양적인 분석을 주된 연구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양적 자료가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질적 자료를 동원하는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고 있다.

이 중 박형민(2003)의 “살인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II)”와 같이 기록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면서 양적인 분석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수사기록의 질적인 성격을 드러내려는 시도를 보이지만, 질적인 풍부함을 드러내기보다는 구체적인 사건내용에 대한 약간의 언급만을 하고 있을 뿐 수사 및 재판기록의 질적인 성격을 본격적으로 활용하지는 못한 연구가 있는 반면 아래에 소개되는 연구들은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이 적절히 조화되어 양적인 포괄성과 질적인 깊이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시도한 연구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 강은영(2001), 노인수형자의 특성 및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강은영(2001)은 기록조사, 면접조사, 기관조사라는 세 가지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먼저 기록조사에 대해서 연구자는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가 60세 이상 노인 수형자라는 특수한 상황 고려하여 기록조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문맹률이 높고, 설문문항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며, 문자해독력이 있는 경우라도 시력저하로 올바른 답변이 어렵기 때문에 설문조사 대신 기록조사를 수행한 것이다.

기록조사의 방법은 일정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상 기관의 노인 수형자 전수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분석 대상이 된 기록은 ‘수용자 신분카드’, ‘범죄경력조회표’, ‘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 등이었다.

면접조사는 기록조사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노인 수형자들의 특성과 수형생활 실태를 현장에서 파악하기 위해 노인 수형자 30명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대상 노인 수형자들은 ‘노인 초범 수형자’, ‘노인 장기복역수’, ‘노인 누범 수형자’ 등의 세 가지 분류기준에 따라 할당하여 조사하였다.

기관조사는 사전에 설문지를 보내고, 그 후에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작성된 설문지를 점검하면서 담당 교정공무원과 면접형태로 진행하였다.

여기에서 자료의 활용에 대하여 정리해 보면, 전체적인 실태분석은 기록조사를 통해 제시하여 양적으로 접근하였으며, 각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면접자료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면접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면접대상자의 개인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진술 내용을 해석하고 있으며, 특히 '수형생활 부적응 양상', '가족에 대한 태도', '노인수형자 처우의 문제점' 등은 질적 자료가 있음으로 하여 더욱 풍부하게 제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최영신(2003), 청소년 약물남용의 행태변화 연구

최영신(2003)은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사용하여 청소년 약물 남용의 실태를 분석하고 있는데, 설문조사는 조사가 수행되는 시기에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555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심층면접은 소년원에 입원하기 이전에 약물남용 경험이 있었던 청소년을 대상으로 남자 청소년 8명, 여자 청소년 6명의 사례가 추출되어 조사되었다. 심층면접의 경우 1인당 1-3회의 면담을 가졌으며, 1회 면담시간은 1시간 30-2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질문은 청소년 약물남용과 관련한 반구조화된 질문을 준비하여 각 회기별로 질문되었다.

이는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려는 시도로서, 전반적인 실태 부분은 양적인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약물구입의 용이성', '구입 경로', '약물남용과 범죄와의 관련성' 등과 같은 맥락적 정보를 분석하는 데에는 질적인 자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면접자료를 통해 약물남용이 직접적으로 범죄행위를 유발시킨다는 명제를 기각하고, 단지 다른 범죄행위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에게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상대적으로 완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드러낸 것은 의미있는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연구의 주요 논거로서 질적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경우

여기에서 소개하는 사례들 역시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의 적절한 조합을 통하여 일반화와 깊이를 동시에 추구하는 연구들이긴 하지만, 앞서 소

개한 연구들 보다 질적 자료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사례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중 김성언(2000)의 “범죄에 대한 청소년의 가치관과 태도에 관한 연구”, 김은경(2001)의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위기개입 방안연구”, 최영신(2000)의 “비행청소년의 학교 재적응에 관한 연구”, 박형민(2004)의 “방화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등은 질적 면접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이며, 강은영·박형민·황지태(2006)의 “불법감청설비 유통실태 조사”, 최영신·이동환·박형민(2005)의 “불법채류자문제를 포함한 외국인 범죄의 현황과 대책” 등은 기록조사자료를 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이다.

가. 면접자료

1) 김성언(2000), 범죄에 대한 청소년의 가치관과 태도에 관한 연구

김성언(2000)은 심층면접과 참여관찰을 수행한 이후 그것을 토대로 하여 그 결과들의 일반화 가능성에 주목하고자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먼저 심층면접자료는 청소년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얻어 졌는데, 10대 청소년들을 일반학생, 근로청소년, 비행청소년의 세 범주로 구분하여 각각의 삶과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가치관의 특성을 탐색하였다. 먼저 일반학생들의 면접이 이루어진 장소는 학생들의 놀이문화가 이루어지는 신촌과 홍대근처, 두산타워와 밀리오레 근처, 성신여대역 근처, 대학로, 강남역 부근, 압구정동, 삼성역 근방, 신천역 주변, 건대입구 등을 면접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총 23명의 일반청소년들과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근로청소년은 수도권 공단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비행청소년은 서울보호관찰소의 도움으로 11명의 비행청소년을 집단 면접할 수 있었다. 여기에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동아리인 <친구사이>의 주최로 열린 ‘청소년동성애인권학교’에 참가한 고등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는데, 이들은 스스로 동성애 성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었다.

김성언(2000)은 ‘설문조사는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을 토대로 해서 그 결과들의 일반화 가능성에 주목하고자 시도’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일반학

생의 경우 목표표본수를 1,000명으로 설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최종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960명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중 인문계 남자 학생이 288명, 인문계 여자 학생이 288명, 실업계 남자 학생이 189명, 실업계 여자 학생이 195명이었다. 근로청소년의 사례는 수원 안산 공단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집되었으며 총 표본수 100명이었고, 비행청소년은 전국 5개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중인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총 227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면접과 설문조사의 내용은 '청소년들의 일상' 및 '비행에 관한 가치관과 태도', '하루의 일과', '놀이문화', '사랑과 성', '음주와 흡연', '약물남용', '오토바이 폭주족', '집단따돌림', '폭력서클', '일진회', '그 외의 범죄와 비행' 등이었는데, 이 연구의 경우 질적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답론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소비문화와 놀이문화의 다양성과 역동'을 보여주기 위하여 면접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성에 대한 의식과 태도', '원조교제에 대한 태도', '폭력에 대한 태도와 양상' 등과 같이 설문조사와 같은 구조화된 틀에서는 포착하기 힘든 내용들을 잘 드러내고 있다. 결국 김성언(2000)은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려는 노력을 시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최영신(2000), 비행청소년의 학교 재적응에 관한 연구

최영신(2000)은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편람> 등 청소년의 비행현황을 드러내는 공식통계자료를 주로 사용하여 실태분석을 수행하면서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 중학교에서 중도 탈락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공식통계 자료에 풍부함을 더해 주고 있다. 심층면담은 총 10명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었는데, 1인당 2-3회 정도의 면담을 실시하였고, 1회 면담시간은 1시간 내지 2시간이 소요되었다.

주된 면담 내용은 '청소년들의 과거 학교생활 경험', '가족관계', '친구관계', '학교에서의 징계경험', '비행사건 관련 내용', '복교와 관련된 경험', '보호관찰에 대한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구자는 심층면담 전에 보호관찰관의 협조를 얻어 각 청소년의 인적사항 및 비행관련 기록을 참조하고 질문할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와 더불어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 58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교교육에 대한 태도’, ‘교육포부수준’, ‘진학계획’, ‘가치관’,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 ‘비행경험연령’, ‘보호관찰 해당사건의 종류와 처분내용’, ‘학교의 징계정도’, ‘복교경험’, ‘학교생활 적응상 어려움’ 등을 알아보았다.

최영신(2000)은 ‘중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교 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질적 면접 결과를 활용하여 ‘학교요인(교사요인)’, ‘또래요인’, ‘제도요인’, ‘가정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중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과정, 교칙 등 ‘학교요인’, 비행친구와의 접촉 등 ‘또래요인’, 형사사법 절차의 진행 등 ‘제도적 요인’, 지나친 기대 또는 무관심과 같은 ‘가정 요인’이었으며, ‘학교 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긍정적 요인으로서 교사의 관심과 같은 ‘교사요인’, 부모의 관심과 같은 ‘가정요인’, 비행친구와 단절과 같은 ‘또래요인’, 그리고 부정적 요인으로서 학교의 관행과 같은 ‘제도적 요인’, 교사의 선입견과 차별대우 같은 ‘교사요인’, 복학후 또래와의 나이 차이와 같은 ‘또래요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 밖에 중퇴 이후 학교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 양적인 자료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심리적요인 등을 드러내는 방법을 사용했으며, 앞선 김성연(2000)과 같이 질적 면접 이후 양적 자료로 보완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3) 김은경(2001),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위기개입 방안연구

김은경(2001)은 기록조사자료와 심층면접자료가 주요한 자료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먼저 기록조사자료는 가정폭력 수감명령 프로그램 및 피해자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의 협조를 얻어 피해자에 대한 상담 기록 208사례, 수감명령대상 가정폭력 행위자 면접기록 85사례에 대한 기록을 확보하여 분석하였고,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법 운영주체, 피해자, 가해자 등 세 집단에 대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여기에서 법 운영주체란 각 처리단계별로 서울지방경찰청 여성계 담당 형사, 서울지검의 담당 검사, 서울가정법원의 담당판사, 수감명령위탁기관

인 서울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 및 상담명령위탁기관 담당자들, 피해자 상담 및 보호시설 종사자와 사회복지사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가정보호사건 심리과정에 직접 참여 관찰하여 가정 폭력과 관련한 법 적용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피해자 조사는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피해자 12명에 대한 심층면접의 방법을 사용하였고, 가해자 조사는 서울보호관찰소의 협조를 얻어 특례법의 처리대상이 되고 있는 가정폭력행위자 11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김은경(2001)은 가정폭력사건의 처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담당 경찰관, 피해자 등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고, 특히 스토킹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구조화된 설문조사나 공식통계분석으로는 포착하기 힘든 내용이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진술조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었다.

4) 박형민(2004), 방화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박형민(2004)은 '범죄분석', '화재통계연보' 등과 같은 공식통계자료를 통한 전체적인 실태 분석과 심층면접을 통한 범죄행위에 대한 분석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방화범죄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자료는 당시의 심정이나 정황을 드러낼 수 있도록 방화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실제 목소리를 재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자료가 수집되었다.

구체적인 자료 수집 과정을 살펴보면 전국 각 교도소 및 구치소의 협조를 받아 형법상 방화범죄의 죄명으로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의 현황을 파악한 후 구치소 또는 각 교도소를 찾아서 면접을 희망하는 수용자들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면접이 진행된 방화 범죄자는 총 55명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비구조화된 일대일 면접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자료의 분석에 있어서도 일차적으로 피면접자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화의 동기가 면접 과정에서 드러나서 양적자료에서 드러내기 힘든 또한 복합적인 심리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화 결심 시점 및 방화 당시 느낌 과 같이 심층면접의 방법이 아니면

포착하기 힘든 구체적인 순간의 감정이 변화와 느낌들을 기술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을 통해 방화범죄가 재산범죄와 같은 도구적 범죄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기보다는, 폭력범죄와 같은 표출적 범죄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었으며,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에 형성한 라포가 작용하여 어린시절의 성장배경이나 가족간의 미시적인 역동, 어린시절의 폭력경험 등을 포착할 수 있었다.

5) 박경래·손석천(2006), 조직폭력배의 소독원에 관한 연구: 재소자에 대한 설문 및 심층면접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박경래·손석천(2006)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조직폭력관련 재소자 1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중 29명에 대해서 심층면접 실시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는 연구이다.

연구자들은 조직폭력배에 대한 체계적 면접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접근의 한계’와 ‘진실성 확보문제’로 규정하였다. 즉 조사 객체들이 가지고 있는 은밀성과 잠재적 위험성으로 인해 조사대상자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접근이 되었다고 해도 이들로부터 나오는 진술이나 접근이 얼마나 사실과 부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현직에 있는 조직폭력배가 아닌 재소자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직폭력배를 단순한 사회악이 아닌 하나의 경제활동주체로 설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자발적인 응답을 유도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대상을 상대로 면접 진행하였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평가받을 만한 연구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심층면접자료를 통해 설문조사로는 얻기 어려운 심층적인 내용과 소독원의 변화과정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조직폭력배간의 차별, 의리, 소독규모 변이, 의도,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 등의 의미있는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나. 기록조사

1) 강은영·박형민·황지태(2006), 불법감청설비 유통실태 조사

강은영·박형민·황지태(2006)는 지금까지 '수사 및 재판기록'을 양화하여 양적으로 분석해 왔던 연구경향에 비추어 볼 때 '수사 및 재판기록'을 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전체 연구 설계상으로는 '수사 및 재판기록'을 양화하여 실태를 분석하는 것이 주된 연구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불법 감청설비의 종류별 유통실태와 제작경로, 유통 경로 등을 드러내기 위하여 대표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질적으로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카메라, 녹음기, 광대역수신기, ESN 복제프로그램 등 양적분석에서 드러난 각각의 감청설비의 유형에 따라 유통 경로 및 판매자의 인적 연결망 등을 분석하였고, 이 설비들이 주로 유통되는 지점을 드러내고자 하였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시도는 양적분석을 보완하여 불법감청설비의 유통과정의 구체적인 양상을 드러내 주고 있으며, 나아가 불법감청설비의 유통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도출하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2) 최영신·이동환·박형민(2005), 불법체류자문제를 포함한 외국인 범죄의 현황과 대책

최영신·이동환·박형민(2005) 또한 공식기록을 질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의미있는 시도라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연구에서는 대검찰청 기획과에서 발행하는 <종합심사분석>의 외국인 범죄 접수·처리현황 자료와 대검찰청 전산실의 전산자료,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서 발행하는 <출입국관리통계 연보>, 법원 행정처가 발행한 <사법연감>, 법무연수원이 발간한 <범죄백서> 등등의 공식통계자료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 경기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 등의 외사과에서 상급기관에 보고한 내부자료를 사용하여 외국인 범죄의 유형을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발생 양상을 분석하고 있다.

5. 새로운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여 질적 자료를 활용한 경우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범죄학 연구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았던 방법인 “실험”과 “단일 사례 심층연구”의 방법을 사용하여 질적인 자료를 활용한 두 가지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물론 이 방법들이 사회과학 분야에서 전혀 새로운 방법은 아니지만, 적어도 범죄학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연구가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방법론들을 개발함에 있어 중요한 준거가 되는 사례들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김은경·이호중(2006), 학교폭력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소년사법 실험 연구(I)

이 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현실에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험이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의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학교폭력의 현황을 묘사하기 위하여 <범죄백서>, <청소년백서>, <보호관찰통계연보>, <국정감사자료> 등 기존의 통계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사건의 대응현황 및 처리실태와 관련된 쟁점들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주요 이해당사자 집단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실시하여, 교사집단,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부모집단,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부모집단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자료의 수집 방법은 앞서 언급한 ‘실험’의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었다. 물론 ‘학교폭력’이라는 특수한 주제였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실험’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 시도는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사회과학에서 ‘실험’의 방법은 주로 심리학의 분과에서 사용되는 방법으로 인지실험이나, 자극-반응모형실험이 주로 시도되고 있다. 그런데 아직 도입되지 않은 제도에 대하여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의미있는 자료를 도출해 낸 것은 범죄학 분야에서는 새로운 연구의 시도이자 자료의 수집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실험의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실험은 먼저 시나리오 구성의 단계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례의 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실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사례들과 여러 상담 및 면접자료들, 그리고 검찰소년부 송치사건 및 법원소년부에 넘겨진 실제 사건내용을 수집하여, 학교 및 경찰기관으로부터 위탁될만한 가장 전형적이라고 판단되는 사건의 형태로 재구성하였다. 이 시나리오는 학교에서 위탁된 두 가지 사례와 경찰에서 위탁된 두 가지 사건 등 총 네 가지로 준비되었다.

다음으로는 역할극에 참여할 역할수행자를 모집하는 단계이다. 역할수행는 기본적으로 자원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 가급적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섭외하여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 따라서 학부모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학교폭력과 관련된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교사역할을 담당한 사람은 실제 생활지도교사를 담당하는 교사들이었다. 단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자는 청소년이지만, 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여 대학생 중 과거에 폭력관련 경험이 있는 자원자들 섭외하여 역할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회합을 조정할 진행자(facilitator)는 평화여성회의 갈등해결센터 관계자들이 2인1조를 구성하여 참여하였다.

본격적인 모의실험의 실행단계에서는 두 번에 걸쳐 실험 진행되었다. 각 회합세션별로 3시간30분에서 4시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각 회합의 전체과정은 비디오로 녹화되었고, 속기사에 의해 녹취되었다.

마지막으로 매회 실험(역할극)마다 참가자들 모두 자기의 역할에 감정이입을 유지한 상태로, 해당 ‘회합’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여 실험을 마치고 있다.

실험의 결과 네 가지 모의 사례에서 모두 일정한 수준에서의 ‘합의문’을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실험이 힘들게 진행되었지만 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경험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회합과정에 대한 설문평가 결과에 있어서도, 대체로 피해자든 가해자든 참석자 대부분은 회합과정이 사건을 다루는 방식, 과정에서 자기표현 욕구 실현, 안전감의 회복, 조정자의 공정성과 자세, 직접 대화를 통한 피해감정 회복정도, 가해자의 반성과 책임자 각성도, 합의 결과의 만족도, ‘회합’의 소송절차의 대안 가능성, ‘회합’이 불편한 감정의 해소 및 실질적

문제해결에 도움이 됨,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송보다는 ‘회합’을 권유하고 싶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결국 참여자들 및 연구팀의 종합평가 회의에서 ‘회합모형’은 학교 폭력을 다루는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일치된 견해를 가질 수 있었고, 나아가 각 사례별로 문제점 점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들을 부각시켜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각 단위별로 회합모델 제안하고, 이와 더불어 학교에서의 회복적 사법 실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회복적 사법의 근거 마련, 회합에 따른 경찰다이버전의 법적근거와 범위 마련 등과 같은 ‘관련 법 제도의 정비와 보완’, 조정자 양성 및 회복적 사법 실천을 매개하는 전문기관의 육성과 지원, 회복기금의 조성 등의 ‘회복적 사법의 실천을 위한 공공지원체계의 마련’ 등의 제안을 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학교폭력이 일반적인 폭력범죄 사건과는 달리 ‘관계의 지속성’, ‘친밀성’, ‘내재된 권력과 힘의 불균형성’, ‘개인 대 다수의 집단 역학’,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서 폭력 혹은 대항적 폭력으로서의 가해’ 등 사법의 일반 법리적 틀로 단순하게 다루기 어려운 복잡한 역학을 담고 있다고 전제하여, 다양한 사례를 시나리오로 구성하고, 학교폭력 문제를 다룰 때 주의해야 할 점과 그 역학을 재검토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나. 성한기·박순진(2003), 대구지하철 방화사건과 피의자의 방화행위에 대한 범죄·심리학적 분석

이 연구는 대구지하철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방화범죄와 방화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연구자들은 이 사건을 대형 참사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방화를 저지른 범죄자와 그의 방화행위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고 있는데, 거시적인 입장에서 방화라는 하나의 행위를 다룬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 자체에 관심을 가진 사례 중심적 연구라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단순 방화를 대형 참사로 만든 행위자의 실패, 제도와 시스템의 실패, 우리사회의 구조적 특성 등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밝히고, ‘분석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주로

방화범 개인이 될 것이며, 시간적 범위 역시 방화가 일어난 이후보다는 피의자가 불을 저지르기 이전이 주로 탐구의 대상이 될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취하는 이유는 '복잡한 범죄자의 행위와 동기'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연구자들이 밝히고 있듯이, 이와 같은 단일 사례에 대한 연구는 사회과학 연구에서 흔히 사용하는 양적인 분석방법을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가장 중심되는 부분은 피의자를 비롯한 각종 인물에 대한 면담자료와 경찰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및 참고인 진술조서이다.

이 연구는 개별 행위자의 행동에 대하여 사회적 맥락을 부여하고 결국 그의 개별 행위를 통해 현재의 사회의 일정 부분을 드러내려는 시도는 평가할 만 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연구라는 방법을 사용한 것은 독특하지만, 아쉬운 점은 실제 분석에 있어 피의자의 생활력 및 사건관련 행적, 정신상태 및 심리검사 결과 분석 등을 나열하고 있는 모습에 그치고 있어 주어진 자료를 보다 입체적으로 그려내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6. 질적자료 활용의 전망

지금까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물 중 질적자료가 활용된 사례들을 통하여 질적 자료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모색해 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학 연구에서 질적자료의 활용은 양적인 자료만을 사용하는 것의 한계와 상대적 빈곤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용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앞으로 범죄학 연구가 더욱 풍부한 내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질적 자료가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질적 면접의 수행을 위한 연구자들을 자기계발

질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면접자와 피면접자의 대면접촉을 통한 질적 면접이다. 범죄학 연구자들이 양적인 자료만을 사용하는 것에서 한계를 느낀다면 일차적으로 질적 면접을 수행하여 양적인

자료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주지하다시피 연구시작단계에서 설정한 가설의 범위를 넘어서기 힘들다. 따라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드러내거나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해석이 불가능하며, 단지 주어진 틀 안에서 변수간의 관계만을 검증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서 다양한 범죄현상이나 범죄자의 삶의 모습을 풍부하게 그려내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비구조화, 혹은 반구조화된 면접을 통한 자료 수집 방법은 면접자와 피면접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연구자가 미리 생각지 못한 다양한 역동이 발생하여 범죄행위의 다양한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질적 면접을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이같은 질적 면접은 연구자의 이론적 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면접 대상자의 자유로운 정신에 의존하기 때문에 범죄현상에 대한 깊이 있고 풍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해 준다.

물론 범죄자 혹은 일탈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면접 역시 자료 자체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박형민(2004)은 이러한 자료의 한계에 대하여 ①피면접자와 면접자와의 라포(rapport)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한 몇 회의 면접에서 범죄내용 등을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을 가능성, ②응답과정에서 사건 자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의식적·무의식적 정당화 기제의 발동 가능성, ③피면접자의 감정의 혼란 등으로 인한 기억의 왜곡이나 관점의 한계 때문에 피면접자의 진술이 실제적 진실과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시설의 수용자와의 면접자료는 공식통계나 수사기록만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사건 당사자의 자기 고백을 살펴 볼 수 있다는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 면접의 의의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건 당시의 감정상황이나 개인적 감정에 관한 진술은 질적 면접이 아니면 포착할 수 없는 자료인 것이다.

그렇지만 면접 결과에 대한 해석은 일반화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록으로 파악하기 힘든 역동을 파악하는 데에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질적 면접으로 도출된 결과들은 사후에 이론적인 검증이 뒤따르거나 양적인 자료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질적 면접에서 도출되는 자료는 피면접자들이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대하여 회고적으로 재해석한 주관적 자기주장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자료의 생성이나 해석에 있어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끊임없는 성찰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나. 수사재판기록의 적극적 활용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양적자료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보다 생동감 있게 사회현실을 그려내기 위해 최근 질적자료에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심층면접 자료와 같이 질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자를 만나 그들과 어느 정도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범죄학의 연구대상이 되는 범죄자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유용한 대안은 기록자료를 질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수사재판기록의 경우 범죄자를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그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강은영·박형민·황지태, 2006. 참조). 특히 심문조서의 경우 피의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의 범죄자의 목소리와 범죄자가 바라보는 범죄의 모습을 범죄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서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범죄자와 상반된 견해를 가진 피해자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으며, 이들과는 거리를 둔 제3자로서의 형사사법기관의 담당자는 객관적인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건기록이 권력기관이 작성한 문서라는 점, 다시 말하면 경찰 및 검찰에서의 범죄자의 진술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또는 자신이 받아야 할 형벌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진술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며, 이것이 연구의 목적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연구를 수행해가는 과정에서는 부족함을 많이 느끼기는 하지만,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사용되기 위하여 실제적 진실을 밝히고자하는 형사사법기관의 노력이 담긴 문서라는 점에서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경찰과 검찰이 실제적 진

실을 드러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피의자의 진술내용의 진위를 가리기 위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함께 수집하는 한편, 피해자와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로 보완하고 있다는 점을 통하여 사건기록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서 제작자의 시공간적 상황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맥락 속에서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한 것은 당연할 것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경우 민간 대학이나 개별 연구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공식기록에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측면 때문에, ‘수사재판기록’이나 ‘판결문’에 대한 내용분석을 수행한 경험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질적 자료의 성격이 강한 공식기록들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연구는 표준화된 조사표를 이용하여 양화시켜 사용해 온 경향이 있다. 물론 이들 자료를 양화하였을 때, 전체적 윤곽이나 추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미덕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각각 사건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을 사장시킨 채 양적인 데이터로서만 사용해 왔다는 것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즉 풍부하고 두꺼운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너무 얇게만 사용해 온 것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양화라는 일종의 추상화 작업의 과정에서 구체성이 상실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손실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감수해야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제는 그 자료를 질적으로 대우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료의 요약의 과정에서도 질적인 풍부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다.

다. 새로운 자료 수집방법 모색

범죄학 연구자들은 지금까지 주로 사용해 왔던 자료의 출처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자료의 근거를 끊임없이 찾아내야 하며,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서 소개한 바 있는 김은경·이호중(2006)의 연구는 주목할 만한 필요가 있다. 물론 참여관찰이나 질적 실험 등은 엄밀히 말하면 사회과학에서 새로운 방법은 아니지만, 범죄학 연구에 있어서는 범죄학의 영역에서는 아직까지 그리 많이 사용된 방법이 아니며 앞으로도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훌륭한 사례로 평

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한기·박순진(2003)의 단일사례에 대한 심층연구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장하여 같이 생애사연구의 방법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같은 범죄자에 대한 생애사 연구는 범죄일반을 유형화하지는 못하더라도 범죄자와 범죄행위의 사회적 맥락을 풍부하게 그려내는 데에 유용한 자료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한 생애사 연구는 한국사회의 단면을 드러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라. 다양한 질적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연구환경 개선

많은 범죄학 연구자들에게 있어 질적 자료의 원천에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에 틀림없다. 형사사법기관의 파견공무원과의 협조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자들에게도 질적인 자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형사사법기관의 관련 실무자들은 질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공식 기록에 대한 기록조사자료에 대한 접근이나 범죄자와의 접촉에 대하여 꺼리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 가장 큰 이유는 개인 신상정보에 대한 유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적 자료의 활용을 통해 범죄 현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범죄의 실태를 풍부하게 기술할 수 있다면 이같은 시간과 노력은 충분히 쏟아낼 가치가 있을 것이다.

만일 질적인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범죄학 이론에 기여하고 나아가 유용한 형사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범죄학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의 목적, 유용성을 관련자들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정보공개에 관한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 연구자들이 질적인 자료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마. 질적자료의 활용을 위한 윤리기준의 마련

질적 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연구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료의 활용에 있어서의 '윤리의 문제'일 것이다. 사람의 행위를 숫자로 환

원시적 전체적인 양상을 드러내는 양적 방법에서는 개별 행위자의 구체적인 행동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신상이 드러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를 피해가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러나 범죄 현상이나 범죄자들에 관하여 두껍게 기술하여 개인의 구체적인 행동의 모습을 그려내는 질적인 자료에서는 우리의 연구로 인해 특정인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바로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들은 윤리적인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들 스스로 질적 자료의 활용에 대한 윤리기준을 마련하여 범죄학 연구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인권의 침해나 개인정보의 유출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VI. 결 론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연구는 범죄 현상을 그려내는 것에 있어 질적인 풍부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왔다는 필자의 안타까움에서 출발하였다. 이 같은 의미에서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필자는 단지 질적 자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했을 때 도출된 긍정적인 결과들을 개관하여 향후 연구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안을 하고 싶었다. 필자를 포함하여 많은 범죄학 연구자들에게 질적 방법론은 선호되지 않거나, 양적인 데이터를 일부 보완하는 수준에서 사용되어 왔던 것이다. 필자는 이제 범죄 현상에 관한 양적인 범죄학 연구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보다 다양한 접근방법과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질적 자료를 활용한 방법이 양적 자료를 활용한 방법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고, 질적 방법론이 대규모 데이터를 계량화하여 전체적인 추세를 나타내는 양적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질적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건 간에 연구에 풍부함을 더해 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즉, 이 연구의 주장은 질적 자료의 만능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양적 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연구방법과 더불어 다양한 접근방법을 취했을 때 얻어

지는 장점이 많다는 것을 밝히려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질적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적절한 연구분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환기하여 범죄학 연구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질적 자료의 활용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질적 자료의 활용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여 반드시 질적인 접근이 필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나, 질적인 접근이 필요한 주제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즉 어느 한 방법이 우월하다거나, 특정 방법만을 사용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대상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범죄학의 주제와 대상에 적합한 다양한 연구방법을 개발하고, 창의적이고 순발력 있게 적절한 방법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연구방법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범죄학 이외의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자료수집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적용하려는 노력과 범죄학 연구의 주제와 대상에 맞는 새로운 연구방법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Babbie, Earl R.(2007),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고성호·김광기·김상욱·문용갑·민수홍·유홍준·이성용·이정환·장준오·정기선·정태인 역, 사회조사방법론, 틈스
- Mason, Jennifer(2004), *Qualitative Researching*, 김두섭 역, 질적 연구방법론, 나남
- Padgett, Deborah K.(2001),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 challenges and rewards*, 유태균 역, 사회복지 질적 방법론, 나남
- 강은영(2001), 노인수형자의 특성 및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강은영·박형민·황지태(2006), 불법감청설비 유통실태 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경동(1991), 사회학의 이론과 방법론, 박영사

- 김경동·이은죽(1993), 사회조사연구방법:사회연구의 이론과 기법, 박영사
- 김성언(2000), 범죄에 대한 청소년의 가치관과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성언(2002), 한국의 민간경비: 성장과 함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성언(2004), 사회내 치우 연결망 구축 및 자원 동원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2001),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위기개입 방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이호중(2006), 학교폭력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소년사법 실험연구(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2000), 소년보호처분 유형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2002), 4호처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2005), 법원의 부모교육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영·김시엽(2006), 목격자 증언의 정확성 제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혁래(2005), 국가권력과 NGO와의 사회적 갈등해소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노성호·김성언·이동원·김지선(1999), 청소년의 집단따돌림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경래·김지영·조준택·고소영(2006), 경비교도대 인권상황 실태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경래·손석천(2006), 조직폭력배의 소득원에 관한 연구: 재소자에 대한 설문 및 심층면접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성희(2004),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생애사연구를 중심으로, 원미사
- 박형민(2003), 살인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형민(2004), 방화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성한기·박순진(2003), 대구지하철 방화사건과 피의자의 방화행위에 대한 범죄·심리학적 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심영희·조정희(1990), “범죄피해조사의 방법론적 문제에 관하여: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동진 (2002), 소년법상 자원보호자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천현·연성진·이민식(2001), 규제개혁정책과 부정부패(II):건설·건축, 환경분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임성식·박영실(2005), 선거사범 처리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임성식·이경렬(2006), 선거사범의 처벌과 당선무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임재표(1999), 교도소내 수용자 폭력행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준오(2002),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영실(2002), 여자비행청소년의 교정처우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병인(1999), 범죄신고보상제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병인(2003), 마약조직의 생존형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병인·원혜옥·민수홍·이경재(2004), 수용자 외부교통 확대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용환(2000), 질적연구: 방법과 사례, 교육과학사
- 최영신(2000), 비행청소년의 학교 재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영신(2001), 청소년 폭력범죄자 재활 프로그램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영신(2003), 청소년 약물남용의 행태변화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영신·김승만·박형민(2006), 교정공무원의 직무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영신·박순진(2000), 여성수용자 직업훈련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영신·이동환·박형민(2005), 불법체류자문제를 포함한 외국인 범죄의 현황과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영신·전영실·이천현(2003), 수용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최영신·박순진(1999), 여성수용자의 처우실태 및 개선방향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홍영오·이수정(2006), 범죄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방안 및 지원체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Status and Prospect of Qualitative Data in the Criminological Study

Bark, Hyung Min*

Criminology is the empirical science that makes a scientific explanation, and that proposes an alternative plan. So it is the important issue in the criminological study which data is corrected and used. Now major trends in criminology is analyzing quantitative data, but qualitative data is paid little attention to.

This study is made with intent to catch up the a weak point of using only quantitative data, and introduce the case which make full use of qualitative data.

And this study presents the solutions for effective use of qualitative data, for example, 'self-improvement for performance of qualitative interview', 'practical use of investigation documents', 'groping of the new compilation of data', 'improvement of researching environment for access to various qualitative data', 'arrangement of ethical standard for use of qualitative data.'

주제어 : 범죄학, 질적자료, 질적면접, 수사및재판기록

Keywords : criminology, qualitative data, qualitative interview, investigation documents

* Researcher,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